

전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가단32994(본소), 2021가단188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기타(금전)]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12806(본소), 2021나12813(반소)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가단3299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10. 6.

판결선고 2021. 11.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2.부터 2021.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 소 청구 취 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 소 청구 취 지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및 반소에 공통된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 C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인수를 제안받았고, 당시 C은 원고에게 소개비 150,000,000원을 F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F가 알려주는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6. 2. 2. 100,000,000원, 2016. 2. 12.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15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F에게 송금해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이 사건 병원의 인수에 필요한 약정을 하였으나 결국 그 인수가 무산되었고,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15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다. F는 2016. 5. 17.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5. 19.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6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같은 해 6. 1. 원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같은 해 6. 10.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선택적 청구원인)

1)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법인의 이사장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수대금은 이사장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고 원고가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이사장이 퇴임하면 원고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신용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인수를 소개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용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대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6. 4.경 이 사건 병원 인수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50,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60,000,000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병원인수가 무산된 후 피고는 위 150,000,000원 중 90,000,000원을 반환하고 2016. 8. 11.경 원고에게 나머지 60,000,000원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원인을 ‘이 사건 병원의 인수대금’으로 변경함으로써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2021. 6.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약정금’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21.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는

취하된 것이므로 소송이 종료되었고, 이미 소송이 종료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로 청구를 변경할 수 없으며, 2021. 6. 16.자 준비서면으로 통해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는 종전의 청구와 사이에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출수수료로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150,000,000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50,000,000원 중 반환받지 못한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대출수수료’가 아니라 ‘사례금’이고 원고가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소장과 답변서를 제출하자 원고가 2021. 4. 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변경신청서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대금은 대출수수료가 아닌 이 사건 병원 인수대금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인수대금 150,000,000원 중 6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한다.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 ‘대출수수료로 송금하였고 C이 150,000,000원은 대출을 진행하고 이 사건 병원을 소개하는 수수료라고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표현은 C이 말한 그대로를 옮겨 적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병원 인수대금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원고는 C이 현금으로 건네라는 계약금 200,000,000원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에게 보내라는 150,000,000원도 보냈으므로, 명목이나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므로 인수대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21. 6. 16. 제출한 준비서면에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약정금 청구로 선택적으로 변경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병원 이사장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는 업무 추진을 위해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대출이 무산됨으로써 위 돈을 송금한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나머지 60,000,000원도 곧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부터 이

사건 병원인수가 무산되었고 피고가 위 150,000,000원의 반환을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주장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약정금청구라는 청구원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원고가 청구하는 대금은 대출수수료가 아닌 이 사건 병원 인수대금이다’라는 주장이 기재된 2021.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50,000,000원이 대출수수료가 아니라 사례금에 불과하고 대출수수료로 본다면 불법대출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례금이나 불법대출을 목적으로 교부한 돈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돈으로서 병원인수대금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으로서 사실상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불과하고, 위 변경신청서에서는 여전히 지급명령신청서에서와 같이 이 사건 병원 인수가 무산되었고 피고가 위 돈의 반환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 명목에 관한 주장만을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2021. 6. 16. 제출한 준비서면에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약정금 청구로 선택적으로 변경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원인의 내용 역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와 동일하게 이 사건 병원인수가 무산되었고 피고가 위 돈의 반환을 약속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병원인수 무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피고의 반환약정에 따른 약정금청구권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2021.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또는 위 2021. 6.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그 청구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2021.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취하였다가 위 2021. 6.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약정금청구로 그 청구를 변경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원고가 2021. 6. 16.자 준비서면으로 통해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를 변경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이 위 2021.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른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써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고, 나아가 원고의 위 각 서면을 통한 청구변경은 변경 전후의 청구금액이 동일하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 분쟁해결방법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그 청구변경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수차례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이 사건 병원의 인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가 인수가 무산되었고, 원고가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15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한 후 피고가 2016. 5. 19. 원고 명의의 계좌로 60,000,000원을, 같은 해 6. 1. 원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같은 해 6. 10.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9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6,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8. 11. 원고 및 C과 만난 자리에서 C이 피고에게 “그 저기 150,000,000원 먹은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러는고만”, “자! 그거는 저희한테 꼭 갚으실거죠?”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예”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게 “제 마음의 짐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월 200,000원씩이라도 보내려고 하니 통장 계좌번호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 인수 소개비 명목으로 위 150,0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소개비 등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받아 중간에서 소개한 F에게 60,000,000원을 나누어 주었는데, 나중에 병원 인수계약이 깨졌다고

하면서 받았던 소개비를 돌려달라고 하여 90,000,000원은 돌려주었으나 60,000,000원은 이미 사용하여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한 사실, 피고가 2020. 11. 23.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60,000,000원을 반환할 것인지를 묻는 원고의 질문에 대하여 "60,000,000원 줘야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2월에 저기 2,000,000원짜리 계 타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넣고, 나 여러 가지로 방법 강구하고 있어요", "나 갚는다고 저기 G이한테도 얘기하고 F사장한테도 얘기하고 다 했어요. A씨도 돈 어렵게 번 거 내가 떼어먹을 생각 없어요. 준다니깐요!"라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인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50,000,000원의 반환요청을 받고 그 중 일부인 90,000,000원을 실제로 반환하였고, 원고 또는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머지 6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도 반환한 90,000,000원 외의 나머지 60,000,000원은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을 뿐 나머지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인수가 결렬된 후 원고에게 위 6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60,000,000원에 대한 2016. 6. 2.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60,000,000원의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피고에게 위 60,000,000원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6. 6.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 1. 1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원인 중 위 60,000,000원에 관한 반환약정을 인정하는 이상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인수를 소개해 주고 ‘이로운 언행’을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 인수의 계약당사자라고 자처하면서 이 사건 병원인수가 무산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인수의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병원 인수가 무산된 것도 피고와는 전혀 무관한 원고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기망에 속아 착오에 빠져 원고에게 위 9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피고는 위 증여를 취소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9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에도 ‘배은망덕하게’ 이 사건을 통해 허위 주장을 하면서 나머지 6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증여를 취소 또는 해제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증여의 취소를 이유로, 예비적으로 위 증여의 해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90,000,000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위 증여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제2의 라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인수 과정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이 사건 병원의 인수가 무산되자 원고에게 위 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일 뿐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90,000,000원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9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90,00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증여의 해제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문